

학생상별에 관한 규정

(제정 1993. 9.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2조에 따라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2조(적용범위) 본교 재학생의 상별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상별의 기록) 상별을 행하였을 때에는 상별 대장 및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청취) 상별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이나 단과대학 학과장(전공주임), 지도교수 및 참고인을 상별위원회에 출석시켜 해명 또는 참고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공개) 포상과 징계는 공고로써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상별위원회

제6조(상별위원회) 상별위원회는 학교상별위원회와 단과대학상별위원회로 구분·설치한다.

제7조(구성) ① 학교상별위원회는 선교봉사처장, 교무처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해당 대학원장, 해당 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8., 2014.1.1.>

② 학교상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된다. <개정 2012.5.18>

③ 단과대학 상별위원회는 해당 학장, 단과대학 학과장(전공주임)으로 구성한다.

④ 단과대학 상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장이 된다.

⑤ 상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신설 2018.11.19.>

제8조(임기) 상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① 상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포상

제10조(포상대상)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
2. 선행이 뚜렷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학교발전과 학생자치활동 운영에 크게 기여한 학생
4. 그 밖에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11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성적우수상, 공로상, 선행상으로 구분한다.

제12조(포상의 시기)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1. 정기포상은 개교기념일, 졸업식일, 입학식일에 수여한다.
2. 수시포상은 공적 발생 시에 수여한다.

제13조(포상발의) 학생취업처장 또는 소속 학장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상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 포상 등 매년 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포상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2018.11.19.>

1. 공적조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지도교수 및 단과대학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학생취업처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개정 2012.5.18>

제14조(포상절차) ① 소속 학장이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학생을 추천·포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상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상별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상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상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징계

제15조(징계대상)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 유기정학은 7일 이상 4주 이내로 한다. 다만, 무기정학은 4주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양형) 상별위원회는 징계 양형기준[별표 제1호]을 참고하여 징계의 양형을 의결하고, 징계사유 행위의 유형과 경중, 고의성 여부 및 평소품행, 학업성적, 공적, 반성하는 태도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8.11.19.]

제18조(징계발의) 학생취업처장 또는 소속 학장은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1. 징계 요구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사건 경위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3. 신고인, 피신고인 및 참고인 진술서 1부 (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서식]

4. 지도교수 및 단과대학 학과장(전공주임) 또는 학생취업처장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제18조의2(서류의 갈음) 학생취업처장은 「인권센터규정」 제32조에 따라 징계 요청이 접수된 경우 제18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인권센터에서 제출 또는 공람한 심의 및 조사 관련 자료로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제19조(징계절차) ① 제17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소속 학장은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에 회부·심의 후 징계결과를 학생취업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생취업처장은 학교상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학생취업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② 학생취업처장은 「인권센터 규정」 제32조에 따라 징계요청이 접수된 경우 학교상벌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29.>

[본조개정 2018.11.19.]

제20조(징계혐의의 조사 및 고지) ① 학생취업처장 및 소속 학장은 학생이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신고는 학생취업처장 및 소속 학장에게 서면,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학생취업처장 및 소속 학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피조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피조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④ 학생취업처장 및 소속 학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심의 및 조사, 결과 자료로 제1항의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제21조(피해자 보호) ① 학생취업처장 및 징계혐의 학생의 소속 학장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피해의 지속, 확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징계혐의 학생을 신고한 자 또는 징계사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연락의 제한, 공간의 분리 등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징계혐의 조사 과정 중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3.29.]

제22조(징계의 시효) ① 징계 요청 및 심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30조에 의한 재심의 요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징계 관련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제23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상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징계혐의 학생 또는 피해자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경우
3.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징계혐의 학생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학생은 위원이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상벌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제24조(징계 의결의 기한)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3.29.]

제25조(권리의 정지) ① 학생이 근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업 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정지된다. <개정 2023.3.29.>

② 학생이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개정 2018.11.19., 2023.3.29.>

③ 학생이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적변동(휴학 및 자퇴)을 하더라도

도 복학 및 재입학 시 징계처분 사실은 연속적으로 유효하며, 휴학 및 자퇴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1.19.>

제26조(특별지도) 학생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 및 해당학과장(전공주임)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9., 2023.3.29.>

제27조(특별감면 및 해제) 징계중인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상벌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총장은 징계기간 중이라도 이를 감면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제28조(가중처벌) 총장은 징계처분을 받았던 학생에게 다시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제29조(통보) 총장은 학교상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처분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징계대상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수 및 해당학과장(전공주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2023.3.29.>

제30조(징계의 재심의) ① 징계처분의 통보를 받은 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1회에 한하여 징계 재심의 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재심의 요구를 받은 학교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및 재의결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9.] [본조개정 2023.3.29.]

부 칙

① 이 규정은 199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상벌위원회가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규정 제138호)은 자동폐지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3.29.>

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징계 양형기준

징계사유	징계 양정	근신 ¹⁾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1. 품행 불량					
가. 폭행상해 및 협박			○	○	○
나.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및 그 밖에 성관련 불량행위) ²⁾	○	○	○	○	○
다. 절도 및 공금 유용			○	○	○
라. 문서 위/변조, 허가 없는 간행물 제작·배포	○	○	○	○	
마. 대학의 명예 훼손	○	○	○	○	○
바. 본교 설립이념(기독교 정신)에 위배			○	○	
사. 형법에 근거한 불법 행위 ³⁾	○	○	○	○	○
아. 기타 품행 불량	○	○	○	○	
2. 학업 관련					
가. 시험성적 조작 및 문제 유출			○	○	○
나. 시험 중 부정행위 ⁴⁾			○	○	○
다. 대리시험				○	○
라. 과제물 등 제출물 표절	○	○	○		
마. 대리출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	○	○		
3. 기타 사항					
가. 정보(게시)물 무단 열람, 변조, 훼손, 유출, 정보시스템 해킹 ⁵⁾			○	○	○
나. e-mail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	○	○	○	
다. 교직원 서명 위조	○	○	○		
라. 시설물 무단 사용, 학교재산 무단 방출 및 공공시설 사적 점거, 파손 ⁶⁾	○	○	○	○	
마. 수업 방해			○	○	○
바. 미 승인 단체 조직 및 집회 ⁷⁾				○	○
사. 해당 징계사유의 행위의 반복			○	○	○

1)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30시간(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1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또는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및 그 밖에 성관련 불량행위)에 관한 처벌
 - 가. 사전계획 없이 순간적인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및 그 밖에 성관련 불량행위)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동조자 포함)에게 내·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 나. 인권침해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및 그 밖에 성관련 불량행위)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가해자(동조자 포함)와 공간 분리, 수업 분리, 강제 휴학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형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의 판별은 형법의 기준에 따른다. 단, 법률적으로 기소유예 및 훈방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학생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사건보고서를 참고한다.
- 4) 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 가. 사전 계획한 바 없이 순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을 무효로 한다.
 - 나. 사전에 부정행위 자료를 작성하였거나 책상, 벽, 기타 보일 수 있는 곳에 자료를 기록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일의 전 과목을 무효로 한다.
 - 다. 본교 재학생간의 대리시험 및 답안지 교환, 시험답안지를 외부로부터 반입한 자는 해당학기의 전 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 라. 타교 학생의 대리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타교 학생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자는 제적한다.
- 5) 정보(게시)물이란 학사관리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공개 상태의 정보(게시)물에 한한다.
- 6) 학교 시설물 무단 사용 및 학교 재산 무단 방출, 실화 및 방화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재산상 피해액을 전부 변상한다. 재산상 피해액이 변상되지 않는 경우 추가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7) 단체란 학생단체 등록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8) 생활관(기숙사) 내에서 일어난 일은 학생생활관 운영세칙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 성적우수상

[] 공로상

[] 선행상

소속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적기간			
공적내용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포상 추천서

소 속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추 천 요 지			
위와 같이 학생 포상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요구서

1. 관련근거

- 가. 「학칙」 제22조 포상 및 징계 (상벌위원회)
나.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8조 (징계 발의)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학교상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에 관한 심의를 발의합니다.

3. 징계대상자

소 속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4. 징계사유

대상자	관련 근거	비고

5. 발의 주요내용

- 20 년 월 일 (시간) (장소)에서 신고인(피해자) 학생에 대해 000을 한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이에 대한 징계 요청

6. ○○대학 상벌위원회 의견서

- 본 사건은 000에 해당되며,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처리의 전례에 비추어 피신고인(가해자)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청됨.

○○대학 상벌위원회 위원장

(인)

학교상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건 경위서

구	분	신	고	인	피	신	고	인
소	속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요		경		위		
신		고		인		요청 내용		
신		고		일				
1. 신고인 상담 및 소견 가. 상담 내용 나. 소견 2. 피신고인 상담 및 소견 가. 상담 내용 나. 소견 3. 신고인 및 피신고인 진술서 요약 가. 신고인 진술 요약 나. 피신고인 진술 요약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책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진 술 서

[] 신고자(피해자)
[] 피신고자(가해자)
[] 참고인(제3자)

소속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은 20 . . , OO대학 OOOO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진술합니다.			
사건 개요	※가급적 육하원칙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조치사항			
조사자 의견			
조사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의견서

소	속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의견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징계처분 통지서

소 속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 건 명			
징계처분 일자			
징계 사유 (조치 사항 의결 사유)			
징계처분 내용 (조치 사항)			
전주대학교 학교상벌위원회는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전 주 대 학 교 총 장 (인) 징계 학생(학부모)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징계 재심의 요청서

소 속 대 학		학 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사 건 명			
징계처분 일자			
징계처분 내용 (조치 사항)			
징계 재심의 신청 사유			
위와 같이 징계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인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